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---

〔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〕

## 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17.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조 공 선

#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복지환경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 -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  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민간위탁 필요성
  -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#### ○ 재계약 6개소

어린이집명	위탁체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
파라곤키즈	서기영	천마산로 65, 호평파라곤관리동	178	38	'26. 7. 2. ~ '31. 7. 1.
라운사랑	김예리	경춘보학1길 7, 라온프라이빗4단지 내	156.4	29	'26. 9. 21. ~ '31. 9. 20.
다산지금	박영신	다산중앙로82번길 87-17, 다산센트럴파크 6단지 내	363.63	84	'26. 10. 11. ~ '31. 10. 10.
다산자이 폴라리스	최민경	다산순환로 242, 자연앤자이아파트 내	318.19	73	'26. 10. 11. ~ '31. 10. 10.
행복나무	심상미	순화궁로 458-58, 단지 내 (별가람마을 1-8단지)	621.54	80	'26. 10. 11. ~ '31. 10. 10.
다산사랑	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 복지재단 (정혜경)	다산중앙로123번길 47, 다산메트로 3단지 내	430.6	69	'26. 11. 1. ~ '31. 10. 31.

○ 재위탁 1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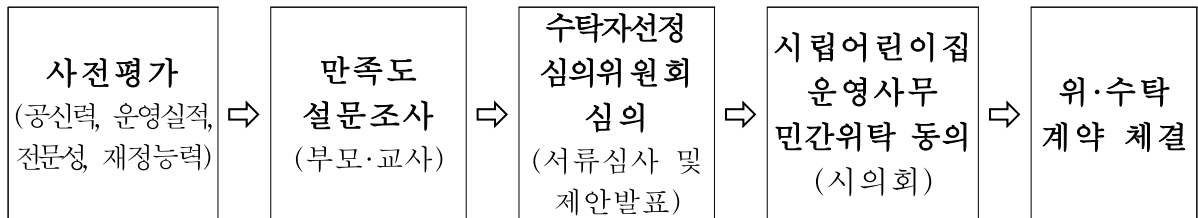
어린이집명	소재지	규모 (m <sup>2</sup> )	정원 (명)	위탁기간	비고
시립키든	별내3로 64-16, 별빛마을 3-6단지	820.68	80	'21.11.1. ~ '26.10.31.	'26.2차 수탁자심의위원회(예정)

나. 위탁사무 내용

-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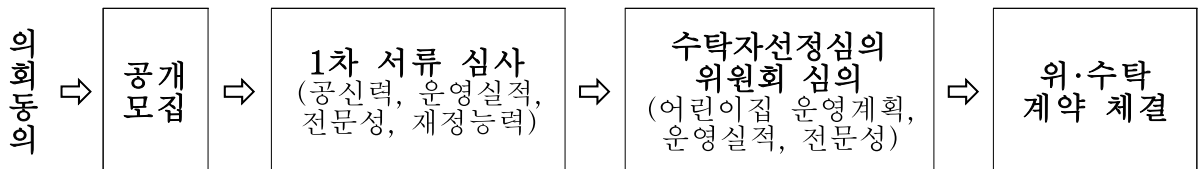
다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(재계약)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

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,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

- (재위탁)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

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, 1·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

라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
- 소요예산 : 6,096,820천원(2026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)

【2026년도】

(단위 : 명, 천원)

연번	어린이집명	정원	보육 교직원	소요예산 및 산출내역		
				계	인건비 (보육교직원)	운영비 (관리운영비, 보육활동비 등)
계				6,096,820	4,181,807	1,915,013
1	파라곤키즈	38	11	670,866	446,446	224,420
2	라온사랑	29	11	534,115	379,062	155,053
3	다산지금	84	23	1,151,968	841,155	310,813
4	다산자이 플라리스	73	16	988,455	661,643	326,812
5	행복나무	80	22	1,084,207	753,913	330,294
6	다산사랑	69	13	844,595	528,911	315,684
7	키든	80	14	822,614	570,677	251,937

마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, 법적 건전성,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
경제적 효율성	○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
바.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

연번	어린이집명	최종 결과	계* (100점)	1차 평가(40점)*	2차 평가(60점)
				사전평가, 부모·교직원 만족도 조사, 회계점검	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
1	파라곤키즈	적격	90.6	40	50.60
2	라운사랑	적격	87.2	40	47.20
3	다산지금	적격	84.2	36	48.20
4	다산자이 플라리스	적격	85.2	39	46.20
5	행복나무	적격	82.0	35	47.00
6	다산사랑	적격	87.2	36	51.20

\*가산점(최대2점) 포함 점수

사. 향후계획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</li> <li>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</li> </ul>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</li> </ul>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</li> <li>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</li> </ul>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·관리 가능</li> </ul>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</li> </ul>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</li> </ul>

구 분	검 토 의 견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
총 합 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</li> <li>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</li> <li>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</li> </ul>

- 2026. 4. : (재위탁1개소)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 
2026. 6. : 2026년 제2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
- 2026. 6. ~ 10. : (어린이집별 상이) 시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체결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참고자료 :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 [붙임2]  
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 [붙임3]
- 다. 관련부서 : 보육과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, 사전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·단체·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아울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며,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 이에 따라 본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**☑ 「영유아보육법」**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**☑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**

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·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③ 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,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## 붙임2

## 재계약 대상 시립어린이집 성과평가 세부내역

- 심 의 일 : 2026. 3. 31.(제1차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)
- 심의위원 :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위원 7명

구 분	심사항목	배 점	어린이집명						
			파라곤키 즈	라온사랑	다산지금	다산자이 플라리스	행복나무	다산사랑	
	계	100	88.6	85.2	82.2	83.2	80.0	85.2	
	가산포함합계	102	90.6	87.2	84.2	85.2	82.0	87.2	
1 차 평 가	점수(40점)	40	38	38	34	37	33	34	
	가점포함점수(최대+2점)	42	40	40	36	39	35	36	
	1.운영체의 공신력	10	10	10	8	8	8	10	
	2.운영체의 운영실적	회계관리의 적절성	4	4	4	4	4	4	4
		만족도조사 (부모·교사)	9	9	9	9	9	5	5
		취약보육 운영	3	1	1	1	2	2	1
		열린어린이집	1	1	1	1	1	1	1
		시책사업 운영	가점 (2)	2	2	2	2	2	2
	3.운영체의 전문성	업무경력	7	7	7	7	7	7	7
		포상 및 공모 사업 실적	1	1	1	1	1	1	1
4.운영체의 재정능력	5	5	5	3	5	5	5		
2 차 평 가	[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심의] 1.운영체의 운영실적 2.어린이집 운영계획 3.운영체의 전문성	60	50.60	47.20	48.20	46.20	47.00	51.20	

\*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체 위탁 선정

\*\*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

# 붙임3-1

# 시립어린이집 위탁체(재계약) 심사 기준표

## [1차 정량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 계	40			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</li> <li>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양호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</li> <li>· 위탁기간 중 법적 건전성*이 우려되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</li> </ul> * 위탁 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 ※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부적격 처리(위탁 취소)	10점 8점 6점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17	회계관리의 적절성 (4)	- 위탁기간 내 재무회계 점검결과(수입·지출 원칙,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 기준 준수) · 우수 · 보통 · 미흡	4점 2점 0점
		어린이집 만족도조사 (9)	- 부모 만족도조사(10항목×5점=50점) *소수점 이하 반올림 · 90% 이상 (45점 이상) · 80% ~ 89% (40점 ~ 44점) · 70% ~ 79% (35점 ~ 39점) · 70% 미만 (34점 이하) ※ 단, 회수율이 70%미만인 경우	6점 5점 4점 3점 2점
			- 보육교직원 만족도조사(10항목×5점=50점) *소수점 이하 반올림 · 90% 이상 (45점 이상) · 80% ~ 89% (40점 ~ 44점) · 79% 이하 (39점 이하) ※ 단, 회수율이 70%미만인 경우	3점 2점 1점 0점
		취약보육 실시 (5점)	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포함),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· 위탁기간 내 3년 이상 · 위탁기간 내 1년 이상 ~ 3년 미만 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미포함), 시간제보육 중 3개 이상 실시 - 취약보육(장애아통합 미포함), 시간제보육 중 2개 실시 - 취약보육, 시간제보육 중 1개 이하 실시	3점 2점 2점 1점 0점
		열린어린이집 지정 (1)	·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일 기준,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	1점
시책사업 운영 (가점)	-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 · 1년간 운영 · 2년 이상 운영	+1점 +2점		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8	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(7)	· 10년 이상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 · 3년 이상 ~ 5년 미만 ※ 경력인정 : 시설장 100%,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(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) 종사자 70%	7점 5점 4점
		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(1)	· 위탁기간 내에 보육 관련 포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 자 ※ 장관, 도지사, 시장 표창에 한하며, 공모사업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수상실적까지 인정	1점
4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(5)	<단체·개인> · 2억 이상 · 1억 이상 ~ 2억 미만 · 1억 미만 <법인> · 5억 이상 · 3억 이상 ~ 5억 미만 · 3억 미만	5점 4점 3점

## [2차 정성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 계	60			
1. 운영체의 운영실적	13	시설 운영 관리 (8)	·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·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·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 정도	(우수) 8-6점 (보통) 3-5점 (미흡) 2점이하
		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(5)	·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2. 어린이집 운영계획	25	보육사업계획 (10)	·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·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·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· 참신성, 전문성,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	(우수) 10-8점 (보통) 7-5점 (미흡) 4점이하
		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(5)	·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· 운영계획의 구체적, 타당성, 이행가능성 여부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		예산의 적절성 (5)	· 세입·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(세입항목) 보육료수입, 수익자부담금, 인건비 보조금, 보육료보조금, 기본보조금, 기타지원금 (세출항목) 인건비, 업무추진비, 기타운영비, 급간식비, 행사비, 수익자부담금지출, 전출금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		어린이집의 건강·급식·위생·안전관리의 적절성 (5)	·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(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,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, 재난대비 안전교육, 교통안전교육 등) · 건강·영양·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절성	(우수) 5점 (보통) 4점 (미흡) 3점이하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22	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(12)	·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·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(전문자격증 보유, 연구논문, 표창)	(우수) 12-10점 (보통) 9-6점 (미흡) 5점이하
		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/ 운영의지 / 향후 발전계획 (10)	·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	(우수) 10-8점 (보통) 7-5점 (미흡) 4점이하

- 제외대상(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): ▲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▲최근 5년 이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, ▲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, ▲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, ▲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. 이 경우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한다.

# 붙임3-2

# 시립어린이집 위탁체(재위탁) 심사 기준표

## [1차 정량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										
합 계	30													
1. 운영체의 공신력	10	도덕적·법적 공신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실태 (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)</li> <li>·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</li> <li>· 지적(시정명령·개선명령 등)사항이 1건 이상, 2건 이하인 경우</li> <li>· 지적(시정명령·개선명령 등)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 (추가1건당 0.5점 감점)</li> <li>※ 국가·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(단,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)은 10점 부여</li> </ul>	10점 8점 7.5점										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5	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약보육(영아, 장애아, 다문화, 그 밖의연장형) 및 시간제보육,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</li> <li>· 3개 이상 운영</li> <li>· 2개 운영</li> <li>· 1개 운영</li> </ul>	2점 1점 0점										
		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내 어린이집 근무경력</li> <li>· 10년 이상</li> <li>· 5년 이상 ~ 10년 미만</li> <li>· 5년 미만</li> </ul>	2점 1점 0점							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5년내 자원봉사 실적</li> <li>· 50시간 이상</li> <li>· 없음</li> </ul>	1점 0점										
		시책사업 운영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책사업 운영 시 가점</li> <li>· 1년간 운영</li> <li>· 2년 이상 운영</li> </ul>	+1점 +2점										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10	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0년 이상</li> <li>· 7년 이상 ~ 10년 미만</li> <li>· 5년 이상 ~ 7년 미만</li> <li>· 3년 이상 ~ 5년 미만</li> <li>· 3년 미만</li> <li>※ 경력인정 : 시설장 100%,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(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) 종사자 70%</li> </ul>	7점 5점 3점 2점 1점										
		원장의 전공 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아교육·(영)유아보육·아동학 전공자</li> <li>·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</li> <li>· (전문)학사 학위 취득한 자</li> </ul>	2점 1점										
		최근 5년 이내 공모사업 수상실적 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있음</li> <li>· 없음</li> <li>※ 장관, 도지사, 시장, 한국보육진흥원장 수상실적 인정</li> </ul>	1점 0점										
4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(5)	<table border="0"> <tr> <td>&lt;단체·개인&gt;</td> <td>&lt;법인&gt;</td> </tr> <tr> <td>· 2억 이상</td> <td>· 5억 이상</td> </tr> <tr> <td>· 1억 이상 ~ 2억 미만</td> <td>· 3억 이상 ~ 5억 미만</td> </tr> <tr> <td>· 1천만원 이상 ~ 1억미만</td> <td>· 1억 이상 ~ 3억 미만</td> </tr> <tr> <td>· 1천만원 미만</td> <td>· 1억 미만</td> </tr> </table>	<단체·개인>	<법인>	· 2억 이상	· 5억 이상	· 1억 이상 ~ 2억 미만	· 3억 이상 ~ 5억 미만	· 1천만원 이상 ~ 1억미만	· 1억 이상 ~ 3억 미만	· 1천만원 미만	· 1억 미만	5점 4점 3점 2점
<단체·개인>	<법인>													
· 2억 이상	· 5억 이상													
· 1억 이상 ~ 2억 미만	· 3억 이상 ~ 5억 미만													
· 1천만원 이상 ~ 1억미만	· 1억 이상 ~ 3억 미만													
· 1천만원 미만	· 1억 미만													

## [2차 정성평가]

심사항목	총점	세부항목		배점
합 계	70			
1. 어린이집 운영 계획	40	보육사업 계획 (10)	·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·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·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· 참신성, 전문성,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 적합성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 이하
		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(10)	·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, 평가에 관한 계획 * 보육프로그램,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, 재정지원, 회계·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· 운영계획의 구체적, 타당성, 이행가능성 여부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 이하
		예산의 적절성 (10)	· 세입·세출예산 편성의 적절성 (세입항목) 보육료수입, 수익자부담금, 인건비 보조금, 보육료보조금, 기본보조금, 기타지원금 (세출항목) 인건비, 업무추진비, 기타운영비, 급간식비, 행사비, 수익자부담금지출, 전출금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 이하
		어린이집의 건강·급식·위생·안전관리의 적절성 (5)	·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(성폭력·아동학대 예방교육,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, 재난대비 안전교육, 교통안전교육 등) · 건강·영양·위생 및 급식관리 계획의 적절성	(우수) 5~4점 (보통) 3점 (미흡) 2점 이하
		지역사회 연계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(5)	·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및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 ·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및 기회제공	(우수) 5~4점 (보통) 3점 (미흡) 2점 이하
2. 운영체의 운영실적	5	운영체의 운영실적 (5)	·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·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※ 국가·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(단, 보육사업이 목적 사업으로 명시)은 5점 부여	(우수) 5~4점 (보통) 3점 (미흡) 2점 이하
3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25	시립어린이집 운영능력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(10)	·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·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(전문자격증 보유, 연구논문, 표창) ※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장관, 도지사, 시장 표창 인정	(우수) 10~8점 (보통) 7~5점 (미흡) 4점 이하
		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/ 운영의지 / 향후 발전계획 (15)	·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	(우수) 15~13점 (보통) 12~10점 (미흡) 9점 이하

- 제외대상(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): ▲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, ▲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, ▲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, ▲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, ▲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위원별 배점 결과,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함. 단,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.
-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위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